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차 례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	2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Ⅱ. 전형일정	4
Ⅲ. 전형방법	4
Ⅳ. 지원자격	5
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8
Ⅵ. 전형료 및 납부방법	9
Ⅶ. 합격자 사정원칙	10
Ⅷ. 유의사항 및 문의처	10

##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

### ◆ 전형방법

모집단위	서류평가	면접고사	계	비 고
전 체 (아래 제외)	100%	-	100%	
한의예과 의예과	70%	30%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 원서 및 서류접수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3.09.11.(월) ~ 09.15.(금)	• 인터넷 원서접수(JinhakApply)
서류제출	2023.09.11.(월) ~ 09.18.(월)	• 2023.09.18.(월) 우체국 소인 인정

###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유의사항

<p><b>1. 복수지원</b></p> <p>수시모집은 최대 6회(교육대학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p> <p>※ 지원 횟수 산정 : 수시모집으로 실시하는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을 대상으로 하나의 전형에 지원 시 1회로 산정</p> <p>※ 외국인,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p> <p><b>2. 이중등록 금지</b></p> <p>※ 다음 사항 중 어느 1개 항이라도 위반한 지원자는 합격 또는 입학を 취소합니다.</p> <p>가.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충원)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p> <p>나.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p>
---

### ◆ 온라인 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p>1. 우리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한의예과, 의예과에 지원하는 자는 <b>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b></p> <p>2. 우리대학은 지원자가 입력한 정보를 입학관련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고사장 안내, 합격 통보메일/SMS 발송 등 입학업무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3. 우리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모든 제출서류의 사실여부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

###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소속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인원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외국인
					신입학	편입학			
불교문화	인문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b>교직</b>	30	(3)	약간명	○		
			불교문화콘텐츠전공	20	(2)		○		
	인문	명상심리상담학과	20	(2)	○				
스마트시티융합	인문	고고미술사학과		35	(3)		○		
	예체능	디자인미술학과		70					
	자연	바이오제약공학과		50	(5)		○		
	공학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40	(4)		○		
			에너지·전기공학과	64	(6)		○		
	공학	스마트안전공학부	안전보건전공	30	(3)		○		
			소방방재전공	30	(3)		○		
	공학	자동차소재부품공학전공		32	(3)	○			
	공학	컴퓨터공학과		70	(7)	○			
	자연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조경전공 <b>교직</b> 정원디자인전공	36	(3)	○		
조경전공 <b>교직</b>									
인문	항공서비스무역학과		60	(6)	○				
인문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b>교직</b>	80	(8)	○				
		조리외식경영학전공	45	(4)	○				
글로벌사회경영	인문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과 <b>교직</b>	40	(4)	○			
	인문		일어일문학과 <b>교직</b>	28	(2)	○			
	인문		중어중문학과 <b>교직</b>	35	(3)	○			
	인문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100	(10)	○			
	인문	사회복지학과		55	(5)	○			
	인문	아동청소년교육학과 <b>교직</b>		25	(2)	○			
	인문	융합경영학부	경영학과	70	(7)	○			
			회계세무학과	40	(4)	○			
			정보경영학과	40	(4)	○			
간호	자연	간호학과 <b>교직</b>		119	(11)	약간명	○		
	인문	보건의료정보학과		30	(3)		○		
	예체능	뷰티메디컬학과 <b>교직</b>		30	(3)		○		
	예체능	스포츠건강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50	-				
스포츠의학전공			40	-					
한의과	의학	한의예과		72	3			1	
의과	의학	의예과		49	2			1	1
	인문	인문콘텐츠학부	웹문예학과	35	(3)	약간명	○		
			국사학과 <b>교직</b>	35	(3)		○		
	인문	사범교육학부	유아교육과	30	-				
			가정교육과	22	-				
			수학교육과	28	-				
	-	-	자유전공학부		58	(5)	○		
계				1,743	35	-	-	2	1

- ※ **교직**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개설 학과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 취득가능 교직과정 이수 가능여부는 교육부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재외국민 신입생 - 입학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35명)을 모집단위별 최대 10%이내에서 선발
- ※ 한의예과 : 재외국민 전형 3명,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전형 1명 선발
- ※ 의 예 과 : 재외국민 전형 2명,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전형 1명, 외국인 전형 1명 선발
- ※ 북한이탈주민 : ○ 표시된 모집단위에서 입학정원 제한없이 선발

## II.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3.09.11.(월) ~ 09.15.(금)	• 인터넷 원서접수(uwayapply.com)
서류제출	2023.09.11.(월) ~ 09.18.(월)	• 2023.09.18.(월) 우체국 소인 인정
면접고사 (한의예과, 의예과)	2023.12.02.(토)	• 2022.11.24.(금) 이후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사 장소, 시간, 유의사항 등을 확인 • 면접고사는 한의예과, 의예과 지원자만 실시
최초합격자 발표	2023.12.13.(수)	• 본교 홈페이지(ipsi.dongguk.ac.kr)
최초합격자 등록	2023.12.18.(월) ~ 12.21.(목)	• 예치금 없음(문서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2023.12.21.(목) ~ 12.28.(목), 18:00까지	• 등록포기자 발생 시 개별 통보
충원합격자 등록	2023.12.29.(금)까지	• 예치금 없음(문서등록)
등록금 납부	2024.02.07.(수) ~ 02.13.(화)	• 본교 지정은행

## III. 전형방법

모집단위	반영비율			환산총점(기본점수)	비 고
	서류평가	면접고사	계		
전 체 (아래 제외)	100%	-	100%	1,000(600)	
한의예과 의예과	70%	30%	100%	서류평가 700(420) 면접고사 300(180)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 한의예과,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단위는 서류 100%로 선발
- ※ 환산총점이 600점(1000점 만점) 이하일 경우 사정제외
- ※ 한의예과/의예과 지원자의 서류평가 환산점수 또는 면접고사 환산점수가 최하점(기본점수)일 경우 사정제외

### 1. 면접고사

형 식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위원 : 2인</li> <li>· 면접시간 : 10분 이내</li> <li>· 면접형태 : 개별면접</li> </ul>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를 참고하여 지망 전공에 대한 학문수학능력, 성장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비 고
한의예과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 중 3개 과목 등급의 합	5이내	탐구 : 상위 1과목 반영
의예과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 중 3개 과목 등급의 합	4이내	

## IV. 지원자격

### 1. 신입학

#### 가.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

구분	자격 요건
재외국민	■ 해외근무 / 사업 /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대상자로, <b>학생이 우리나라 고교 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b></li> <li>※ 부모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li> <li>■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만 지원 가능</li> <li>※ 국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외</li> </ul>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나.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 **외국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외국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
- **외국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구분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단위 : 년)				
	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재외국민	3	학생 재학 기간의 3/4	3	학생 재학 기간의 2/3	학생 재학 기간의 2/3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2	12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1) 재외국민

-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365일)까지의 각각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라) 학생이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의 각각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2)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가)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임
- 나) 11학년제 이하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 불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다)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자격인증 세부기준**

1) 외국학교 인정

-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제외)
- 보호자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해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제3국 수학인증서 제출)
- 국내외 검정고시(GED, 자학교시 등 포함)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외)

2)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

-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학기계산)을 적용
- 보호자(부모)는 역년(Calendar Year·연도계산)으로 외국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 산정
- 지원자의 외국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
- 보호자(부모)의 근무(또는 거주)기간 부족분은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을 통산하여 최대 1개월까지만 인정. 다만, 체류기간의 경우 부족분 없이 해당 최소체류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자의 재학기간 동안 보호자(부모)가 해당국가에서 근무 및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또는 거주) 기간이 지원자격 요건에 미달할 경우
  - ※ 지원자의 외국학교 전입일 이전 보호자(부모)가 계속하여 외국 근무(또는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지원자 졸업일(학적변동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근무(또는 거주)기간으로 산입
  - ※ 지원자의 외국학교 졸업일 이후 보호자(부모)가 계속하여 외국 근무(또는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졸업일이 속한 해당 학기말까지의 기간을 근무(또는 거주)기간으로 산입
- 전·입학, 편입학 시 국·내외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는 1학기 이내에서 외국학기로 인정. 중복이수한 경우 뒤에 이수한 학기를 외국학기로 먼저 인정하되, 1학기를 초과한 중복 이수학기는 외국 재학기간으로 불인정
  - ※ **외국 고등학교 과정 재학 중 국내 중학교에 편입 또는 국내 고등학교에 신입학 한 경우 해당 외국 고교 과정은 국외재학기간으로 불인정**

- 월반의 경우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학기 이내에서 인정(월반사유서 제출)
-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학기 종료 기준일은 다음 학기 개시 전일까지임
- 외국학교 졸업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일까지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 학기 중간에 편입학(전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해당학기 성적이 모두 존재해야 인정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개학기 이상 연속 중복시 1개 학기로 대체 가능

3)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고교졸업은 2023년 2월까지를 인정함. 단, 해당 국가의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초과 인정

4)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국가명	학제			총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6학년	1-3학년	1-3학년	12년
중 국	1-6학년	1-3학년	1-3학년	12년
미 국	1-5학년	6-8학년	9-12학년	12년
호 주	1-6학년	1-4학년	1-2학년	12년
필리핀	1-6학년	1-4학년		10년
말레이시아	1-6학년	1-5학년(초급 3년, 상급 2년)		11년
영 국	1-6학년	1-5학년	1-2학년	13년
뉴질랜드	Junior-2 Standard-4	Form 1-3	Form 4-7학년	13년

5) 중복학기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D : 국내학교, A :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①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②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③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2. 재외국민 편입학

가. 재외국민 신입학 대상자와 동일한 지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 1학년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한 자
- 2) 외국소재 2,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V.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1. 제출서류

-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 미비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소정양식) 1부
재외국민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6. 외국인 등록증(부, 모, 지원자) 7. TOPIC 3급이상 자격증 ※ 국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외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대체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심사인(스탬프) 또는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또는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주증, 영주권 등

※ 현지법인근로자는 해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세 납부이력을 영사확인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해외 파견 근로자 제외)

2. 제출방법

제출방법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
제출기간	• 2023.09.18.(월), 17:00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은 2023.09.18.(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제출처	• 우편발송 :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관리실 • 방문제출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1층 입학관리실
유의사항	• 서류는 원본제출 또는 사본에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해당하는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 우편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접수기한 내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 • 본교 도착 전, 우편 발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본교가 책임지지 않음

VI. 전형료 및 납부방법

1. 전형료

구분	일반계열	한의예과, 의예과
금액	₩50,000	₩100,000

2. 전형료 환불 및 금액

-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질병, 과오납 등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구분	환불금액	비고
천재 또는 지변	전액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질병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과오납	해당금액	

3. 전형료 환불방법

- 가. 수험생이 입학원서 접수 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입금
- 나. 전형료 환불계좌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 바람

■ 전형료 지출잔액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 Ⅶ. 합격자 사정원칙

1.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최종단계에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일반계열 : 외국학교 재학기간(장기 재학자 우선)
  - 나. 한의예과, 의예과
    - ① 면접고사 성적 상위자
    - ② 서류평가 성적 상위자
    - ③ 외국학교 재학기간(장기재학자 우선)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가. 필답·면접고사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 나.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다.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조건 미달자
  - 라.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 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3. 입학원서의 허위 기재,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제출한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4.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Ⅷ. 유의사항 및 문의처

### 1.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해당하며,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나.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 접수된 입학원서와 제출서류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라. 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마. 고등학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졸업년도 제한 없음)
- 바.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요청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환불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환불은 본교 규정에 따릅니다.
- 사.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2. 문의처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전화	054) 770 - 2031 ~ 4
팩스	054) 770 - 2006
주소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관리실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담당자 앞



※서식 2. 서류심사지원서(학부모)

◆ 학부모 기재사항 ◆

구분	외국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해외거주기간 (해당 학년·학기에 ↔로 표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간	체류국가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 (성명 : )	~																									
	~																									
	~																									
	~																									
	~																									
	~																									
	~																									
	~																									
	~																									
	교 포	영주국 :	영주권취득일 :												영주권번호 :											
모 (성명 : )	~																									
	~																									
	~																									
	~																									
	~																									
	~																									
	~																									
	~																									
	~																									
	교 포	영주국 :	영주권취득일 :												영주권번호 :											

※ 서식 3 : 학력조회동의서

# Dongguk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

##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 LETTER OF REQUEST

To whom it may concern :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kind assistance with our university's admission process. We need your school's verification of the graduation records of the applicants from your school.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be served only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Student's Name	
Date of Birth(yyyy/mm/dd)	
Sex(Male or Female)	
Name of School(Campus)	
School Phone No.	
School E-Mail	
School Address	
Period of Enrollment (yyyy/mm/dd ~ yyyy/mm/dd)	
Date of Graduation <input type="checkbox"/> / Transfer <input type="checkbox"/>	

※Attachment(s) : Letter of Consent(High School transcript(s))

Kindly verify the above student information in the box below, and please return to following e-mail address(ipsi@dongguk.ac.kr)

Verification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 Remark
1. Basic Information (Name, DOB, Sex, School Info.)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input type="checkbox"/> ( )
2. Period of Enrollment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input type="checkbox"/> ( )
3. Date of Graduation <input type="checkbox"/> / Transfe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input type="checkbox"/> ( )
4. Descriptions in Transcript(s) [For High School Only]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input type="checkbox"/> ( )
Certified by	
Name & Position :	
Signature :	
Affiliation :	
Tel :	
Fax :	
Email :	
Date :	
Comment :	

Office of Admissions, Dongguk University  
 123, Dongdae-ro, Gyeongju-shi, Gyeongbuk, 38066, Korea  
 Tel : 82-54-770-2031-4  
 Fax : 82-54-770-2006 / E-mail : ipsi@dongguk.ac.kr / homepage : <http://ipsi.dongguk.ac.kr>

※ 서식 4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지원자 정보	전 형 명			
	모 집 단 위			수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정보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지역	합격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1.	소 재 국 가	졸업(예정)일	년 월 일
			입 학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학 교 명		
		2.	소 재 국 가	전 출 일	년 월 일
			입 학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학 교 명				
	3.	소 재 국 가	전 출 일	년 월 일	
		입 학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학 교 명			

연번	활동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발행)기관
1				
2				
3				
4				
5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방법>

### 1. 활동기간

-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2. 활동내용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 반드시 작성 유의사항의 제한 내용 확인)

- 활동내용 칸 작성 시 활동(발행)기관명 기재 금지

### 3. 작성분량: 1개 활동 당 500자 이내 (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5개 활동 작성 가능)

### 4. 증빙자료: A4용지 단면 기준 2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축소/양면 복사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4.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 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6.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사. 도서출간 사실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사실
  -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사실
- \* 위 내용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

- 가.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 나.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다.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라.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마.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2023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동국대학교 총장 귀하**